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43호 2022. 2. 3.(목)



선	기관의 장
결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700호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거창군 조례 제2701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22

거창군 조례 제2702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5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35

거창군 규칙 제1333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56호 법령 용어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44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2년 2월 9일

거창군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6조(「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7조(「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규정」”을 “「거창군 민원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청실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의 개정)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0조(「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제21조(「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이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24조(「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
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조(「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 온천개발자문
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실과장급 이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1조(「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경상남도 거창군교육청 교육장”을 “경상남도 거창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경상남도진주보훈지청장”을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33조(「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5조(「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제11조제1호 중 “구관장”을 “생활용품 판매장”으로 한다.

제36조(「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38조(「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39조(「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40조(「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1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2조(「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3조(「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4조(「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국군기무부대관계자”를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한다.

제45조(「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6조(「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7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조(「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9조(「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0조(「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의 개정)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3조(「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54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으로 한다.

제56조(「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7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 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
----------	--------

제출연월일	2022. 1.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중앙·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조례 조문: 57개

나.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중앙 또는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가) 실과, 기획감사실 ⇒ 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나) 진주보훈지청장 ⇒ 서부보훈지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2. 28.~2022. 1.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교육발전협
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2년 2월 9일

거창군 조례 제2700호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
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
 3. 군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
 4. 군 소재 초·중·고·대학교 학생
 5.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언론사·시민단체·주민
- ⑤ 협의회의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무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초등분과
2. 중·고등분과
3. 대학분과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5
----------	--------

발의일자	2022. 1. 4.
발 의 자	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권순모, 박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품 교육도시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나. 협의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다.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회의를 정함(안 제6조)
- 마. 위원의 해촉을 정함(안 제7조)
- 바. 실무분과위원회를 정함(안 제8조)
- 사. 의견의 청취를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제130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 6.~1.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2년 2월 9일

거창군 조례 제2701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칙(조례 제2679호 시행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조례 제2679호 시행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2
----------	--------

제출연월일	2022. 1.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조례 제2679호(시행 2021. 9. 29.) 개정과 관련하여 구 조례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보호가 문제되어 그들의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소급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함(안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 1) 현행: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변경: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본문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17.~12.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2년 2월 9일

거창군 조례 제2702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군민은 소비주체로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금목표
 4. 인증
 5. 거창푸드 품질관리
 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거창푸드 생산) 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거창푸드 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과 산업·학교·연구소가 상호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제7조(거창푸드 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거창푸드 소비) ① 거창푸드는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증 신청 등) 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은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세부 품목 및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둘 수 있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식품 시료 채취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 여부

2. 인증표시 정지 및 인증취소

3.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표시) 인증식품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하고, 그 표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인증표시 정지,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인증식품의 품질과 생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인증의 홍보·지원) ① 군수는 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거창푸드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에 대한 교육
2. 인증식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
3. 인증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군수는 센터 및 거창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푸드 상품화, 선전, 판매, 운반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 ① 군수는 군의 유희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거창푸드 관련 정보·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1조(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군수는 군민에게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과 인증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푸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거창푸드종합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운영비, 로컬푸드 재정지원비, 인증 심사원, 인증 홍보·지원,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 위원회 수당, 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등
 나. 관련조문: 제9조, 제10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387.5	442.2	405.6	405.6	405.6	2,046.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 30,000천원
2. 로컬푸드 마케팅 지원: 20,000천원
3. 거창푸드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0,000천원
4.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지원: 218,000천원
5. 거창몰 운영지원: 76,000천원
6. 인증 검사비: 200,000원x100건=20,000천원(2023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개소로 자체 검사 가능)
7. 전담 인력 인건비(1명): 34,788천원(2022년 최저임금 기준)
8. 위원회 수당: 2,520천원
9. 인증 교육비: 5,000원x100명x2회=1,000천원
10. 거창푸드통합정보시스템
 - 가. 구축비: 20,000천원
 - 나. 운영비: 3,400천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
----------	--------

제출연월일	2022. 1.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창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1) 지원계획 심의기구 변경: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 먹거리 위원회
다. 거창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를 정함(안 제9조)

마.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신설함(안 제10조)

바. 거창푸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7조)

1) 신설: 인증심사원,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의 홍보·지원

2) 검사비용 지원, 인증신청,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표시, 인증취소 등
사.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8조)

아. 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정함(안 제19조)

자.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안 제20조)

차.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정함(안 제21조)

1) 거창푸드 인증 등의 정보 제공

카.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법령 재기재 규정 등 삭제

1)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현행 제5조~제14조)

2) 거창푸드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등(현행 제21조)

3) 사용자 지정 및 마일리지 제공(현행 제27조)

4) 위탁운영의 세부내용, 위탁취소, 시행규칙(현행 제29조·제30조,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387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1. 10.~11.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2월 9일

거창군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
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거창군 자체감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 중 “실·과”를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거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35조”로 “법 제172조”를 “법
제192조”로 한다.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

위원회”로 한다.

제4조(「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에 의한”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일상감사규정」”을 “「거창군 일상감사 규정」”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실과”를 “본청 담당관·과”로 한다.

제9조(「거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단서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으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46조제1항”을 “영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을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14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으로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지정의료 기관”을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 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2
----------	--------

제출연월일	2022. 1. 6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규칙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규칙 조문: 15개

나.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조직개편사항 반영: 실과 ⇒ 담당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2. 28.~2022. 1.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2년 2월 9일

거창군 규칙 제1333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정지원 기준) 군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의 기준을 매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3조제1항 중 “여행업체”를 “여행업자”로 “30일”을 “15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지원 기준) 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2박 이상은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며, 여행업체당 한 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재정지원 기준) 군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의 기준을 매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p>
<p>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자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재정지원 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10	10	10	10	10	50

3. 관련 의견

거창군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6
----------	--------

제출연월일	2022. 1. 25.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현행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예측불가능한 관광환경 변화에 맞지 않아 수시로 변화는 환경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자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 여행업자 지원기준 규정방법 개선(안 제2조, 현행 별표)

- 1) 현행: 별표
- 2) 변경: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고

나. 관광객 유치 여행업자 지원신청 기한 조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관광진흥법」 제76조
- 2) 「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10백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 5.~1. 2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양평가: 해당사항 없음

법령 용어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2년 2월 9일

거창군 훈령 제456호

법령 용어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법무행정 처
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의 개정)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과 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 거창군 일상감사 규정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
칙」”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거창
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및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 공보발행규정」의 개정) 거창군 공보발행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 실·과”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과”로 한다.

제5조 중 “실·과장, 기획감사실장”를 “담당관·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6조(「거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거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거창군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의 개정)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획감사실”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실과장 및 읍면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중 “실과, 읍면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32조·제34조 중 “실과소, 읍면”을 “부서”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의 개정) 거창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다만,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제11조(「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의 개정) 거창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거창군 민원 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제3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1) 및 2)”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및 제4조제2호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 민원 사무심사관(민원봉사실장)”를 “민원심사관(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민원사무착오”를 “민원 처리의 착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민원사무처리(주무)부서”를 “민원 처리(주무)부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사무심사관(민원봉사실장)”을 “민원심사관(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영조물 등 관리규정」의 개정) 거창군 영조물 등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규칙”을 “부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용어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2
----------	------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법령의 개정과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상 인용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규정 조문: 13개

나.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2) 중앙 및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가) 실과 ⇒ 담당관·과,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담당관

나)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 합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111-90 등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556-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111-90	20220203	20190919	갈지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248-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화길 83-42	20220203	20091228	조선 선조 때 하빈인 월담 이정기가 그의 호에 “월”을 따고, 빛날 “화”자를 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48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마항길 80-57	20220203	20090401	북상면 농산리와 위천면 강천리 사이의 말목고개 아래 자리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665-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원신기길 91	20220203	20090401	신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9-3, 29-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방촌길 42-7	20220203	20090401	방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23-3, 2052, 2053, 2054-1, 2054-2, 2055, 2058, 2064-1, 2065, 2066, 2068, 2268, 227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	20220203	200912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문동리 25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20-150	20220203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629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1길 294	20220203	20090401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국사봉 남쪽 기슭에 자리한 한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42-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1길 114-14	20220203	200904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6-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어인안길 170-70	20220203	20090401	어진 사람이 많이 날 것이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8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411-16	20220203	20090702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조항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 전화 : 055-940-3384, 팩스 : 055-940-3349, 이메일: dldbcjs@korea.kr

붙 임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노외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거치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거치구역·거치장치를 운영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제11조의 거치 제한구역 크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10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u>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u></p> <p><u>②</u>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u>노상·노외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거치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③</u> 군수는 제2항에 따라 <u>거치구역·거치장치를 운영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11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u> 군수는 <u>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u></p>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u></p> <p><u>③</u> 군수는 <u>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u></p>

<신 설>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제11조의 거치 제한구역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거료 및 보관료(제12조제3항 관련)

수거료	보관료	
	1시간 초과 시 매 30분 마다	1일
8,000원	100원	2,000원

비고: 1일 보관료는 다음날 8:00까지로 한다.

□ 「도로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거창군 공고 제2022-182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시외버스 이용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였으나, 유료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변경(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나. 신설(안 제9조 제3항)

4. 예고기간 : 2022. 1. 28.(수) ~ 2. 18.(수)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라. 전화 055-940-338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beom050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

제출일자	2022. 1. .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제안이유

시외버스 이용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유료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변경(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일 이상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반영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기준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5. (생략)</p> <p>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p> <p>1.~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p> <p>1.~8. (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기준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u></p>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률을 법령 위임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나. 행정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제출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치나 종교 활동 목적의 사용에 대한 제한 명확화(안 제9조 4호)
- 나. 법령위임범위에서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감면 기준 신설 (안 별표 2)
- 다. 법령 범위에서 위탁 근거 정비(안 제23조)

다. 시행규칙

- 1)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명, 제3조제4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 2) 관리 위탁 신청(연장)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안 제8조,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7. 입법예고기간 : 2022. 2. 3 ~ 2022. 2. 23 / 20일간

8.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2. 23.(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 50132
- 전화 : 055)940-8731, FAX: 055)940-87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경우”를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체육시설 위탁·위임)”을 “(체육시설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종전 제1항) 중 “경기단체나 체육단체”를 “단체”로 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80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중 근거법령란에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6조·제8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u>경우</u> <p>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p> <p>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u>경기단체나 체육단체</u>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u></p>	<p>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u>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p>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p> <p>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23조(체육시설 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u>단체</u>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삭 제></p>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

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 삭제 <2010.1.25>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사사례(의견12-0276)

다만, 위임의 근거가 개별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것이

라는 법령체계 측면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임에 대한 일반조례의 성격을 갖는 「철원군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개별조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개별조례 부칙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28개 사무

25	소재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	체육시설 사업소
----	----------------	-----------------------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 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

리 및 운영조례」”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제4항”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제3항”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p> <p>제3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청소년·어린이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p> <p>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p>	<p><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 조례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규정 2018.10.31. 삭제됨에 따라 삭제검토</p> <p>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p>

제8조(관리위탁) ① (생략)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단체 및 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 가.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수료	
				없음	
<p>「거창군 체육시설 <u>관리·운영 조례</u>」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인</u>: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u>법인이 아닌 단체</u>: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u>개인 또는 법인·단체</u>의 재산현황 1부 5.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p><u>개인</u>: 신분증 사본 1부</p>		
<p>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법령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보고(2018.12.) 2018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수요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 발급건수 : '06년 5,118 → '15년 4,320 → '16년 4,076 → '17년 3,856(만통)

《 감축 추진 사례 》

- ❖ '06~'07년, 중앙·지자체 2,402개 사무 중 884종(36.8%) 감축
 - ❖ '09~'10년, 22개 중앙부처의 209사무 중 125종(60%) 감축
 - ❖ '12년, 627개 산하기관* 사무 1,732개 중 1,002개(57.9%) 감축
- * 중앙(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자치단체(직영기업, 공사·공단)

○ 감축 곤란할 시 서명확인서를 병기하도록 하여 서명확인제도 활성화

※ 매년 국회 결산 지적사항 : '17년 예결위, '16년 예결위, '15년 안행위 등

□ 그간 추진경과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 통보(3.21)
- 기관별 정비대상 사무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제출(~4.30.)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비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회의(5.28.,6.28)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자문 TF」 구성(6.22) 및 정비 기준안 마련(9.10)

《 정비기준안 》

- ❖ (법규 등) 신분확인 위해 제출 시 원칙적 폐지, 대리인이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 기 폐지된 사례를 참고하여 폐지
- ❖ (관행) 규정 없이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경우로 원칙적 폐지, 장기검토사무에 해당하여 법규 등 마련 필요할 경우 서명확인 병기

- 지방자치단체 요구사무 누락사무 재조사(7.3.~8.24.)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여부 검토를 위한 서면자문 실시(10.5.)
- 기관별 요구사무 자문결과 통보(10.18.) 및 정비계획 재협의(~11.30)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 1.] [법률 제11245호, 2012. 2. 1., 제정]

◇ 제정이유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2.2.9.~ 2022.2.24.(15일간)
- 3.대상차량 : 1대(붙임 참조)
-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259더5672	스파크 1.0	2020	기타	2022. 2. 3.